

사단법인 이순신포럼 정관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순신포럼”(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고 한다. 외국어 표기는 “ The Korea Admiral Yi Sun Shin Forum” 이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법인은 반만년 역사 속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임진왜란 당시** 풍전등화의 우리나라를 구한 우리민족의 성스러운 영웅 이순신 제독의 충효정신과 솔선수범의 정신적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전국민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미래지도자로서의 리더십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이순신 정신을 체계적으로 교육, 연수, 체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소재지)

- ①법인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법인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지방에 지부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단, 법인 설립 시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46-14 에 둔다.

제 4 조 (사업)

- ① 법인은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 홍보, 교육. 문화사업.
 2. 1 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미나 또는 문화포럼의 개최.
 3. "이순신 포럼"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구축, 프로그램개발, 콘텐츠 개발 및 출판 등 각종 부대사업.
 4. "이순신포럼" 지도자 양성 및 인증사업.
 5. "이순신포럼"을 통한 국제 교류협력사업.

6.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국내외 단체와 기관과의 협력 및 연대 사업 추진.
7. 위 각호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8.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 1 항의 목적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이순신 파워리더십버스 기획 및 운영
2. 국공립기관 연수원, 청소년수련원, 평생교육원, 기업연수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제공 및 운영
3. ‘이순신’관련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사업.

제 5 조(이익의 제공)

- ① 법인은 제 4 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에게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 ①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하되,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립발기인회원) 법인의 연구와 실천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한 자는 정회원이 된다.
 2. (정회원) 법인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기관, 단체, 기업, 연구소, 교육, 언론, 문화산업분야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입회하고자 하는 자.
 3. (특별회원)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는 단체나 기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하고자 하는 자

4. (준회원)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는 대학생이나 청소년 등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하고자 하는 자

② 회원의 자격과 구분, 입회절차 등 회원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등록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회비 등과

함께 법인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창립발기인이나 창립발기인 총회에 참여 한자는 회원이 되며, 입회비는 면제한다.

②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입회비, 연회비, 그리고 분담금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회원은 회비의 납부와 정관 준수 의무를 지며,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전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비 납부 시까지 회원 자격이 자동 정지 된다.

③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회원은 법인이 보유한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이 주최하는 세미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명부)

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2. 거주지 주소 혹은 직장주소
3. 이력서의 개요

4. 입회 년. 월. 일

5. 사진

제 10 조(회원의 상벌)

① 법인은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7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써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는 결정 전에 그 대상 회원에게 소명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 11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인

2. 20 인 이내의 이사(이사장 1, 수석부이사장 약간명, 부이사장 5, 상임이사 약간명)을 포함한다.

3. 감사 2 인.

4. 약간 명의 자문위원 및 고문.

② 제 1 항의 임원 중 이사장과 상임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 12 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단, 초대 이사진 및 감사는 창립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13 조(상임이사)

① 제 4 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중 **약간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4 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정기총회 이전에 임기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정기총회 때까지 임기를 연장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진의 결원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총회에서 보선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 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 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5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이나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6 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 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 조에 규정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7 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나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8 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9 조(총회 구성 및 소집)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① 총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1 회로 하고 매 회 년도 개시 1 개월 전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④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 100 분의 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⑤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 일전 까지 문서(이메일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총회 의결사항)

- ① 총회는 다음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의 승인
 3.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또는 기채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및 회원의 제명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법인의 해산.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총회는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위임 받은 사항의 이행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총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5 조 제 3 항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의원 100 분의 20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사고 또는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 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로 진행하여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제 22 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3 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4 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 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 ③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 일전까지 문서(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공지포함)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는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이사회는 제 3 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5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5 조 제 3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사고 또는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 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6 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② 이사회에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7 조(이사회에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개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개정 기타 제반 규정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회원가입승인과 상호친목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중요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와 연구
7. 회원의 권익도모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11.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그 기능에 속하는 사항의 일부를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위원회는 위임 받은 사항과 이행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집행위원회

제 28 조(집행위원회)

① 법인의 총회의 의결사항과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집행위원회는 업무내용에 따라 사업분과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연구위원회, 자문위원회, 문화상품개발위원회 등으로 구성하며, 집행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 29 조(사무국)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사무국은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출석이사 2인, 감사가 서명 날인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 8 장 자산 및 회계

제 30 조(자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은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 31 조(재산의 관리)

- ① 제 30 조 제 3 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결 또는 주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 1 항 및 2 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 32 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33 조(경비)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일반회비
3. 특별회비
4. 기부금, 찬조금, 사업수입, 기타 수입

② 상기 1 항의 금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치 아니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책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④ 제 1 항의 수입금중 기부금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제 34 조(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35 조(회계 년도)

회계 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최초 회계 년도는 법인의 성립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6 조(예산, 결산 및 감사)

- ① 법인의 수지예산은 매 회계 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이사회를 거쳐 편성하고, 수지결산은 매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수지예산과 수지결산은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잉여금처리)

연도 말 결산잉여금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에 편입 하거나, 또는 익년도에 이월할 수 있으며, 결산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제 38 조(임원의 보수)

법인은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 보수 규정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제 39 조(인터넷 공개)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9 장 보 칙

제 40 조(명예회장 및 고문)

- ① 법인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회원 및 학계 외 업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명예회장 및 고문을 이사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로써 추대할 수 있다.
-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수시로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41 조(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법인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학계와 업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이사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로써 추대 및 위촉할 수 있다.

제 42 조(연구위원과 연구위원회)

법인의 사업목적 연구와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식을 얻고 연구하기 위하여 별도의 영역을 정하여 이사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로써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43 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해당부처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재산의 귀속)

법인의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 45 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당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6 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의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47 조(기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당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 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